2010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민서	780728-2*****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T ¬	상 호	보험종류	주피보험	자		
종 류	사업자번호	증권번호	종피보험자		납입금액 계	
보장성	흥국화재해상보험 (주)	마이카자동차보험	780728-2****	김민서	516,020	
工00	102-81-07***	71635107498320***			310,020	
H자서	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	알파Plus보장100 6	780728-2****	김민서	85,870	
보장성	116-81-03***	6Q3105***			00,070	
보장성	아메리카인터내셔날어슈어런 스캄파니	(무)다보장의료 3	780728-2****	김은영	180,050	
T0.0	201-84-01***	201-84-01*** 39213***			100,000	
보장성	동부생명보험 (주)	웰빙건강-만기	780728-2****	김민서	360,600	
100	202-81-18***	981033***			000,000	
보장성	하나에이치에스비씨 생명보 험 (주)	(무)하나로충분한암보 험(만기환	780728-2****	김민서	271,830	
工0.0	214-86-00***	10213***			271,000	
	인별합계금액				1,414,370	

- 1. 공제대상금액 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(나이요건 제한 있음)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.
- 2. 공제한도 : 보장성 보험료(연 100만원),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(연 100만원)



2010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민서	780728-2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상 호	납입금액 계
130-13-49740	브 ***	5,200
130-16-57334	동남***	2,100
130-26-91520	일***	1,500
130-30-71763	ō⊦***	12,530
130-82-02173	(학***	333,450
130-82-06960	(八十***	12,000
130-91-67746	김기***	3,600
214-09-45521	두***	3,100
인별합계금액		373,480

1. 공제대상금액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
※ 사내근로복지기금,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,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・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(보약포함)구입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

2. 공제한도: 본인・장애인・만65세 이상(한도없음),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





2010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민서	780728-2*****

■ 신용카드 사용내역

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공제대상금액합계
102-81-14***	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	201,000
104-86-23***	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	89,510
120-81-54***	롯데카드 주식회사	1,067,750
201-81-68***	(주) 국민은행	6,427,878
202-81-14***	(주) 한국외환은행	1,256,787
202-81-48***	신한카드 주식회사	11,682,904
211-87-21***	주식회사 현대백화점	2,648,160
214-81-37***	비씨카드 (주)	700
인별합계금액		23,374,689

- 1. 공제대상금액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・직계존비속・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20%(직불카드 거래 중 후불교통사용금액 등 일정 기간 경과 후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분류됨)
- 2. 공제한도 : 근로자 총급여액의 20%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
- ※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학원비 지로 납부액, 직불(선불)카드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

2010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등]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민서	780728-2*****

■ 직불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공제대상금액합계
104-81-83***	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	36,900
202-81-48***	신한카드 주식회사	184,860
인별합계금액		221,760

- 1. 공제대상금액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・직계존비속・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25%(직불카드 거래 중 후불교통사용금액 등 일정 기간 경과 후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분류됨)
- 2. 공제한도 : 근로자 총급여액의 20%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
- ※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학원비 지로 납부액, 직불(선불)카드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

2010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[현금영수증]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민서	780728-2*****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

(단위:원)

월	사용건수	사용금액	공제대상금액 (월세액 □포함 ■제외)	월세액
01월	2건	4,500	4,500	0
02월	0건	0	0	0
03월	2건	5,840	5,840	0
04월	2건	17,800	17,800	0
05월	1건	1,000	1,000	0
06월	0건	0	0	0
07월	0건	0	0	0
08월	1건	47,600	47,600	0
09월	1건	40,390	40,390	0
10월	2건	75,990	75,990	0
11월	2건	40,990	40,990	0
12월	1건	30,490	30,490	0
합계	14건	264,600	264,600	0

- 1. 공제대상금액: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・직계존비속・입양자의 사용 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금액의 20%
- 2. 공제한도 : 근로자 총급여액의 20%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
- ※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한도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학원비 지로 납부액, 직불(선불)카드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



2010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[기부금]

■ 기부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김민서	780728-2*****

■ 기부금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단 체 명	기부유형	기부금액 계
101-82-07976	아름다운재단	지정기부금	130,000
116-82-00276	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	법정기부금	5,000
116-82-00276	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	특례기부금(조특법 제 73조)	10,000
116-82-00276	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	지정기부금	20,000
인별합계금액			165,000

- 1. 공제대상금액:근로자(사업소득자) 본인・배우자・직계비속이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 (단,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및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)
- ※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, 10만원 초과금액은 기부금 소득공제
- ▶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